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 제 정 : 1981. 3. 1.
- 개 정 : 1985. 3. 1.
- 개 정 : 1987. 12. 1.
- 개 정 : 1999. 9. 30.
- 재제정 : 1999. 10. 1.
- 개 정 : 2006. 3. 1.
- 개 정 : 2017. 12. 28.

제1조(적용 및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법령·정관 및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0-8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대상자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자>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자>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17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처리대장 <별자>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 지>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급)	
	주 소				
출 석 이 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본인 진술 기회부여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본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인] 귀하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 지>

징 계 처 리 대 장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징계의결 번 호	비고
번호	소 속 (신청기관)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직 위	혐의내 용	요구자 의 견	결 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기간	징계위원회 개 최	의결일	의결서 통고일	특기사항		
				혐의당사소속직위					조사자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